

코로나19 감염병 전파에 대한 재난보도에서 개인정보 공개의 적정 범주에 대한 논의

정 지 영*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 연구위원

표 시 영**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 연구위원

■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코로나19 감염병 전파에 대한 재난보도에서 나타나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공개하고 있는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재분류하고, 그 실태를 기사분석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이용자들의 인식을 설문을 통해 검토하였다. 먼저 총 987건의 기사 중 확진자를 특정할 가능성을 높이는 정보가 포함된 기사는 168건이나 되었으며 ‘공익성은 낮지만 정보의 결합 수준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있는 정보’인 나이와 성별 등이 포함된 기사는 460건에서 발견되었다. 이용자들은 ‘공익성도 높고 개인정보 침해수준도 높은 정보’ 중 ‘접촉자 특정 가능성이 높은 정보’까지 포함된 수준의 개인정보 노출을 가장 적정한 수준이라고 인식하는 한편, 정보 노출 수준이 가장 높은 기사의 투명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했고, 나이와 성별과 같은 ‘공익성은 낮지만 정보 결합 수준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있는 정보’의 제공이 코로나19와 큰 관련성은 없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언론보도의 개인정보 공개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안하는 바이며, 공익의 실현과 인격권 보호 사이의 균형점

* 제1저자, trustmejy@naver.com

** 교신저자, siyoungpyo@naver.com

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재난보도, 감염병, 개인정보, 공익, 인격권, 보도준칙

목 차

- I. 들어가며
- II. 선행연구 검토
 - 1. 재난상황에서의 언론보도에 대한 논의
 - 2. 재난보도에서 개인정보 공개의 쟁점: 공익과 개인정보 침해수준
 - 3. 공익과 개인정보 침해수준에 따른 개인정보 공개 범주의 재분류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 2. 연구방법
- IV. 연구결과
 - 1. 코로나19 언론보도에 나타난 확진자의 개인정보 공개 범위
 - 2. 이용자들이 인식하는 코로나 19 확진자에 대한 언론보도의 개인정보 공개의 적정 수준
- V. 결론 및 논의

I. 들어가며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팬데믹(pandemic)의 여파는 정치, 사회, 문화 할 것 없이 모든 영역에 새로운 도전과제를 남기고 있다. 공동체를 유지하는 수많은 조직과 사람들은 유례없는 감염병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정부 및 언론에서 제공하고 있는 감염병 관련 소식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생소하고 두려운 상황에서 양질의 ‘정보’는 유용하고 또 큰 힘을 발휘한다. 하지만 동시에 부정확하고 불필요한 정보는 사회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예상하지 못한 영역에서 피해를 일으키기도 한다.¹⁾

1) 확진자에 대한 과도한 정보의 제공은 감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방역에 차질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이지현(2021. 3. 4). “제 정보 유출됐나 확인 좀”...1339 콜센터에 물리는 신천지 문의, <이데일리>, URL: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621526_625700040&mediaCodeNo=257.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지침은 각 나라마다 상이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팬데믹이라는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역 지침이 개인의 권리를 어디까지 침해하는가를 기준으로 차이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그 중에서 확진자(confirmed caese)와 감염 의심자²⁾에 대한 개인정보 노출 수준은 해당 조직 및 사회의 제도 그리고 정체성과 연결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서구권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찍이 확진자 및 감염 의심자에 대한 정보를 과도하게 노출시켜온 경향이 있다(조성은 2020). 이를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의 방역 지침은 소위 ‘K-방역’이라는 성공적인 사례로 해외에 소개가 되어왔지만,³⁾ 한편으로는 지나친 개인정보 노출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 역시 만만치 않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최첨단의 ICT기술을 활용한 개인정보 수집이 실제 코로나 방역에 효과적으로 작용해 이를 활용하는 나라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⁴⁾ 알권리와 공익을 이유로 개인의 정보인권 즉, 인격권이 일방적으로 희생되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권건보, 2020).

언론보도를 통한 개인정보 침해는 오래된 논쟁거리였으며, 이는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의 사생활침해라는 규범적 가치 사이에서 언론의 바람직한 역할이 무엇인지 성찰하도록 이끌었다(황성기, 2003). 이는 언론이 국민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창구 역할’을 하는 동시에, 이 같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2조의 13에서는 정보 공개를 하는 대상인 감염병 환자에 대해서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 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조의 2에 따른 감염병영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감염병이 의심되는 자에 대해서는 동법 제2조 15-2에서 감염병 환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으로 정의함으로써 확진자와 감염 의심자 간에 구분을 두고 있다.

3) 정책브리핑(2020. 3. 9). ‘민주성+선진 의료+투명한 정부’...외신 ‘한국 코로나19 대응’ 평가,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공감>, URL: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70044>.

4) 이별찬(2020. 3. 25). EU도 휴대폰 추적... 코로나가 불러들인 ‘빅브러더’, <조선일보>, URL: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25/2020032500281.html.

은 정보에는 필연적으로 타인 혹은 타 기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없기에 ‘개인정보처리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언론의 원활한 취재·보도를 담보하기 위해, 언론은 관행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면제 대상이 되어 왔지만(최창수, 2020),⁵⁾ 이 같은 면제가 언론이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고 이용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그에 대한 면책 사유가 돼서도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언론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동시에 정보주체의 권리를 최대한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언론은 감염병을 비롯한 재난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마땅한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언론이 재난상황에서 보도하는 내용은 ‘재난 상황의 타개와 극복’이라는 공적 목적에 부합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 언론 스스로도 자성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최근 언론보도의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비판들을 살펴보면,⁶⁾ 방역당국과 개별 지자체에서 공개하는 개인정보와는 다른 수준의 정보처리를 함으로써,⁷⁾ 혼란과 갈등을 가중시키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 언론이 과연 이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진지한 고민이 요구된다. 이는 예측컨대 감염병과 같이 예외적인 재난상황에서 어떠한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보도지침이 없는 것이 원인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5) 언론은 취재·보도의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제6장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제7장 개인정보 단체소송 등의 규정에서 면제가 된다.

6) 김혜인(2020. 3. 9). “확진자 동선 공개는 과도한 사생활 침해”, 〈미디어스〉, URL: <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7163>; 국윤진 (2020.2.13.). 감염병을 보도하는 언론의 자세...“가이드라인 개정 등 자정 노력 필요”, 〈TBS 뉴스〉, URL: http://tbs.seoul.kr/news/newsView.do?t_yp_800=6&idx_800=2384714&seq_800=10377296.

7) 원병철(2020. 3. 26). 여기저기 공개되는 확진자 동선·정보, 개인정보일까? 아냐까?, 〈보안뉴스〉, URL: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87223>.

언론보도의 개인정보 침해는 특히 재난상황에서 더욱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재난상황에서는 언론에서 어떠한 정보를 언제 제공하는가에 따라서 재난상황의 대응력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표시영, 2020), 재난상황의 극복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개인정보보호보다 우선시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김진옥, 2020). 더욱이 감염병이라는 재난상황에서는 다른 조건과 달리 질병이라는 ‘민감정보’와 개인의 ‘고유 식별정보’가 모두 처리될 수 있고(이근옥, 2020), 이러한 이유로 사생활 침해와 더불어 개인의 권리침해 정도 역시 더욱 증폭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표시영·정지영, 2020). 특히 감염병 하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는 정부 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해당 정보를 수집하고 처음으로 일반에게 공개하는 과정에서 1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2차로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언론보도 내에서 발생 가능하며, 일반 시민이 공개된 정보를 결합하고 가공하여 기사 내 댓글이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하 ‘sns’) 등을 통해 게시하는 과정에서 3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특히 3차 유형의 경우 가짜정보와 진짜정보가 혼재되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는 악성 댓글과 신상털기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한다.⁸⁾ 무엇보다 이를 추적하고 일일이 대응하기란 쉽지 않은바, 이에 따라 애초에 공개되어야 할 최소한의 정보 수준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정보를 감염병 예방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보도하는 언론의 윤리의식 고양과 이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

현재 많은 관련 문헌들에서도 재난상황에서 언론보도의 개인정보 침해수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보도지침과(박미정, 2016), 법규정의 개정이 필요함을 실시하고 있다(송가영, 2020; 이근옥, 2020). 하지만 이러한 지침 및 법률의 개정은 그에 대한 실증적인 논의가 뒷받침 되어야 비로소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그동

8) BBC NEWS 코리아(2020. 3. 4). 코로나19: 신상털이와 악성댓글에 시달리는 확진자, <BBC NEWS 코리아>, URL: <https://www.bbc.com/korean/features-51733612>.

안의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대체로 법적 이익형량의 관점에서 논의가 되어 온 만큼, 본 연구는 여기에 더해 언론이 가지는 사회적 책임과 재난상황에서 보도되는 개인정보의 범주를 학술적으로 논한 뒤, 현재 보도되고 있는 언론보도 내 개인정보 침해 사례들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성된 언론보도 사례를 통해 실제 이용자들이 어떠한 개인정보 노출 수준이 가장 적정하며 언론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실증 분석을 통해, 감염병 재난상황에서 언론의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가이드라인 구성에 제언을 더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검토

1. 재난상황에서의 언론보도에 대한 논의

예기치 못한 재난의 발생은 개인과 공동체를 위기 상황에 놓이게 한다. 물리적·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일정 기간 동안 정상적인 일상을 영위하기 힘들게 된다. 따라서 재난상황에서 나타난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이에 대해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고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사전적 의미의 재난은 “뜻밖에 일어난 재앙과 고난”이다.⁹⁾ 말 그대로 ‘뜻밖에’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난을 맞이하게 되면 ‘재앙’ 그리고 ‘고난’ 그 자체가 된다. 그렇기에, 정부는 재난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각종 법·제도 등의 예방 및 대응체계를 구축해 놓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장(안전관리기구 및 기능)에서는 정부 기관 및 민관 관련 주체들이 재난상황에서 임해야 하는 책무와 역할 등을 정리하고 있으며, 특히 제12조(재난방송협의회)와 제

9) 국립국어사전 참조.

38조의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등)에서는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즉 방송을 비롯한 언론 역시 재난상황에서 개인과 공동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마땅한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주요 행위 주체이며, 우리 사회의 안녕을 위해 책무를 다해야 하는 의무 주체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재난방송 등)에서는 지상파방송사업자뿐만 아니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 등도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을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재난상황에서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줄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언론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일반 개개인은 재난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언론을 통해 얻고 이를 신뢰할 수밖에 없다. 재난상황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정부로부터 생성되는 수많은 정보의 흐름은 제한적이게 되고, 이에 대한 접근도 언론 이외의 개인에게는 쉽게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론의 재난보도에 대한 기대는 높아지며, 저널리즘 원칙에 따른 평가 역시 더욱 엄격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언론 스스로도 특히 재난상황에서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노력을 보이기도 했다. 일찍이 국내에서는 2003년 한국기자협회에서 재난보도준칙을 추진한 사례가 있지만 당시에는 이를 실현하지 못했고(백선거·이옥기, 2012), 이후 2014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언론보도가 제대로 된 재난보도 가이드라인 없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언론의 대참사’라는 비판과 국민의 언론에 대한 불신을 키우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정수영, 2015). 결국 이를 계기로 그해 9월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등 5개의 단체가 주축이 되어 처음으로 피해자 인권보호, 취재진 안전 확보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재난보도준

칙>을 공동 제정하여 발표했다. 그리고 유례없는 감염병 전파 상황에서 언론의 재난보도는 새로운 난관에 봉착하였고, 먼저 2020년 2월 한국기자협회가 <코로나19보도준칙>을 발표하는 한편, 4월에는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가 공동으로 <감염병보도준칙>을 제정·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국내의 언론은 재난상황에서 제 역할과 기능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루어진 무분별한 보도행태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겪고 난 후에야 미봉책 차원에서 보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왔다.

이러한 방식의 재난보도에 대한 논의 진행은 학술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먼저, 국내의 경우 자연재난 발생 빈도와 영향이 사회재난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적었기 때문에 관련 연구 또한 폭넓게 이뤄지지 못했다.¹⁰⁾ 지금까지는 태풍 보도에 대한 기사유형, 정보원 등의 분석을 통해 재난보도의 실상을 살펴보고 언론의 기능을 고찰한 연구(이경미·최낙진, 2008) 그리고 쓰나미에 대한 보도 서사구조를 한·미 비교한 연구나(심훈, 2015) 일본 지진에 대한 재난보도를 분석한 연구들을(김유영, 2017; 문연주, 2012; 조은희, 2012 등) 바탕으로 우리 언론에 재난보도시 중요한 시사점을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의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한편 사회재난에 대한 재난보도는 지금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전파 또는 화재나 참사 상황에서 나타난 언론보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다. 지카바이러스 전파 당시 재난보도 주관 방송사인 KBS의 보도 프레임을 분석하여 재난보도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함의를 이끌어낸 연구(최민음·정희수, 2018)와 메르스 사태 당시 언론의 보도형식이나 내용을 살펴보고(진나영·정정주, 2018), 기자들의 전문성에 따른 취재활동을 분석한 연구(전형준, 2016) 등이 있

10) 한국기자협회의 재난보도준칙에서는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강풍, 대설, 가뭄, 지진과 같이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가 해당되며, 사회재난은 화재나 붕괴, 항공 및 해상사고, 감염병 및 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포함된다고 정리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재난에 해당된다.

었다.

무엇보다 국내 재난보도의 변곡점을 마련하게 된 계기인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언론의 보도 내용(박경우, 2015; 임연희, 2014; 최진봉, 2016, 황유나·전미현·유재웅, 2016), 취재방식(김경희, 2017; 박성우, 2017; 송상근, 2016; 정수영, 2015) 등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는 연구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이외에도 국내 재난보도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의 연구들에서는 해외의 재난보도 사례와 함께 재난보도 시스템이나 가이드라인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보완점 등을 시사하는 연구(김대홍, 2011; 원숙경·윤영태, 2015; 유승관, 2014; 이민규, 2011; 이화행·정성호, 2014 등)가 이어졌다. 하지만, 이와 같은 연구들은 구체적인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지 못하고 현상에 대한 분석에 그치거나, 이에 대한 이론적이고 실증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보다 실효성이 높은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실제 법·제도나 규정 등에 적용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2. 재난보도에서 개인정보 공개의 쟁점: 공익과 개인정보 침해수준

신규 감염병의 국내 전파라는 재난상황에서 관련 언론보도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코로나19의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지역전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확진자 증가 추이에 따라 언론보도량도 여러 변곡점을 지나면서 급증했다. 실제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20일부터 3월 3일까지의 주간 보도 동향을 살펴본 조사에 따르면, 44일간 총 1만8827건의 코로나19 관련 뉴스가 보도됐으며, 국내 확진자 발생 시점부터 3주간 보도 건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¹¹⁾ 이후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언론의 주요 이슈가 총선으로 잠시 돌아섰지만,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와 함께 이전

11) 임경호 (2020.3.4). 언론의 코로나 보도는 어떻게 바뀌었나. <The PR News>, URL: <http://www.the-pr.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292>.

보다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언론보도의 양적 증가가 정보전달의 긍정적인 결과로만 이어진 것은 아니다.¹²⁾ 특히 대구, 이태원 등을 중심으로 나타난 집단감염은 코로나19 전파에 대한 위협 및 위기의식을 고조시켰고 동시에 최초 감염자, 슈퍼 전파자 등 확진자 개개인에 대해 언론과 일반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졌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언론보도에 노출되었으며, 이로 인한 개인의 권리침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기 시작했다.¹³⁾ 뿐만 아니라, 언론은 감염병 전파라는 재난 상황에서 특정 확진자 개인과 집단에 대한 불만과 혐오를 조장하고 사회 구성원 간의 두려움에 의한 갈등 관계까지 조장한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¹⁴⁾

물론 감염병 전파 상황에 대한 언론보도에서 확진자에 대한 정보는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이고, 정부 역시 전파 차단 및 예방을 위해 주요 확진자에 대한 정보를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나아가 감염병 전파라는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민 개개인에 대한 보호와 사회의 안녕이라는 ‘공익’을 위해서다. 그리고 여기서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현 상황에서 국민 스스로 알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정보원에 직접 접촉하여 스스로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기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언론보도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의미한 정보를 올바르게 전달하는 것이며, 이것이 언론의 공익 실현이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언론의 공익을 실현하는 기능론적 입장에서 취재

12) 최승영 (2020. 4. 8). 70일간 ‘코로나’ 들어간 기사 6만여개... 언론이 쌓아올린 ‘공포의 금자탑’. <한국기자협회>, URL: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47504>.

13) 이가혁(2020. 5. 7). 확진자 보도에 언급된 ‘성적 지향’, 꼭 필요한 정보?. <JTBC>, URL: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49233.

14) 김양원 (2020.3.23.). 코로나19 확진자도 혐오의 대상?. <YTN>, URL: https://www.ytn.co.kr/_ln/0103_202003231043548552s.

보도의 자유에 대한 보장은 핵심적인 사항이며, 일반 국민과 다른 정보 원에의 자유로운 접근이라는 특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힘을 얻기도 한다. 그 이유로는 “국민의 알권리를 대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존재로서의 전문적 기관이 자유로이 갖가지 정보에 접근해서 정보를 수집하여, 국민의 알권리에 봉사케 하는 것이 공중과 사회의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김병국, 2005, 152쪽). 그리고 이것은 언론의 기능이자, 동시에 사회적 책임의 근거이다.

실제로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도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동일한 개념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심미선, 2020). 일찍이 1989년 공공기관의 알권리 침해에 대한 위헌판결 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하는데,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충분한 정보에의 접근이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자유로운 표명은 (정보의) 자유로운 수용 또는 접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¹⁵⁾ 그러한 의미에서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 즉, ‘알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보며(이수형, 2005), 이를 위한 언론의 취재 및 보도는 타당성과 목적성을 확보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정보에의 자유로운 접근, 자유로운 수집, 자유로운 처리를 언론이 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와 같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언론의 표현의 자유가 공익을 실현하는 차원에서는 대부분 그 합당성을 인정받아왔지만, 다소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기준에 따라 자행되며 개인의 권리를 사사로이 침해하는 일이 반복되어 나타남으로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민은 공동체 이익과 안녕을 위한 어느 정도의 개인의 권리침해는 감내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을 수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공익적인 이유더라도 지나치게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피해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이 공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논의 선

15) 헌법재판소 1989. 9. 4. 선고, 88헌마22 결정 참조.

상에서 국민의 알권리라는 공익을 위한 언론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기본권 사이의 논쟁 역시 이루어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이러한 논쟁은 관련 기준이 모호하고 추상적이며,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대부분이다(김병국, 2005; 박미정, 2016; 심미선, 2020; 최창수, 2020 등). 특히 뉴스로서의 공적 가치가 높고 일반 시민의 주목도가 집중되어 있는 사안일수록, 이를 가능한 한 빠르고 정확하게 보도해야 하는 언론보도에서는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되는 것이 일반적이다(김병국, 2005). 즉 이때에는 공익이 개개인의 권리보다 우월하게 판단되는 것이며, 사익 침해에 대해 정당성과 면책이 성립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일수록 언론의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에 대한 권한은 커지며, 따라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보 공개에 대한 기준’이 없다면, 지나친 정보 공개로 인해 가해지는 개인의 피해에 대한 적합한 논의를 이어갈 수 없게 된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언론 보도에 의한 개인의 권리침해 중, 특히 개인정보 침해와 인격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코로나19 감염병 전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고 광범위하게 개인의 일상을 마비시키고 공동체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재난상황에서 정부는 가능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고, 이를 언론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무엇보다 감염병이 전파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조직적 차원에서 확진자 및 감염 의심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더불어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여 개개인들이 스스로 접촉을 차단하고 진단검사에 응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특히 최근 발표되기 시작한 코로나19와 관련된 연구들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내의 경우 코로나19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가 휴대전화 위치데이터, 신용카드 사용내역, CCTV 등을 활용해 확진자들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여 대응한 것이 그 효과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권양섭·차상욱, 2020; 오철우, 2020 등), 동선 공개 및 개인 신상과 같은 개인정보의 과도한 노출이 개인의 권리침해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공존하

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이근옥, 2020). 정부가 재난상황에서 공개하는 확진자나 접촉자에 대한 정보를 언론이 확산시키고, 때로는 부수적인 개인정보까지 수집하여 유통하는 과정에서 적정 수준 및 범위 이상의 개인정보가 노출됨으로써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감염병 전파로부터 개인과 공동체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공익에 대해 쉽사리 반기를 들 수는 없다. 하지만,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에 가려져 구체적인 기준 없이 언론을 통해 노출되는 개인정보로 인해 양산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침해에 대한 방조임은 분명하다(이승선, 2017). 재난상황에서 정부의 기능, 언론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수집된 정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방역에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당연하지만(이근옥, 2020), 일정한 개인정보는 여타 필요 차원에서도 합당한 기준에 따라 유통되어야 할 일인 것이다(박정훈, 2010; 손영화, 2014; 이인호, 2007).

3. 공익과 개인정보 침해수준에 따른 개인정보 공개 범주의 재분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는 개인정보는,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 식별정보’와, 해당 정보만으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지만 여타의 정보와의 결합으로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그리고 가명처리되어 복원 없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가명정보’로 구성되어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 2조).¹⁶⁾ 즉 개인정보를 정의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

16)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은 바로 ‘식별가능성’이라 할 수 있다. 개인정보를 구성하는 개념요소와 관련하여 2016년 정부에서 발간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서는, ‘식별 가능성’의 의미는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수단을 고려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쉽게 결합한다’는 의미는 “결합 대상이 될 정보의 입수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결합 가능성이 높아야 함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다. 즉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위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관련된 언론보도에서 제공하는 확진자에 대한 개인정보 중 상당수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이를 통해 나온 정보와 확진자에 대해 이미 인터넷상에 퍼진 정보들을 이용자가 쉽게 입수하여 용이하게 결합할 수 있으므로 식별 가능성이 있는 개인정보에는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개인정보는 복수의 법에 의해 구분되어 명시되고 있으며, 법의 목적 및 취지에 따라 적용되는 개인정보의 범주와 그 처리에 대한 방향성은 차이를 보인다. 감염병이라는 재난상황과 관련하여 확진자 및 감염 의심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감염병예방법의 우선적인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이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소지가 다분하다(정종구·손정구, 2020). 한편 확진자 및 감염 의심자에 대한 정보 공개는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로서,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의 적용도 받을 수 있다.¹⁷⁾ 이렇듯 감염병 하에서 발생하는 개인정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7) 나아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개인정보 침해는 보도 내 댓글이나 기타 인터넷 사이트 및 sns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만, 정보통신망법 경우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였으

보 침해 이슈는 여러 법이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감염병예방법이 특별법적 효력을 가지는 상황이다(이근옥, 2020).

우선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현을 골자로 하는데, 최근 소위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라고 불리는 개인정보 관련법의 대대적인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내 개인정보 개념을 세밀하게 재분류함으로써, 데이터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정보의 활용 측면을 유연하게 개선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강태욱, 2020). 특히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엄격하게 보호받아야 할 개인 식별정보와 더불어, 상업적·산업적으로 보다 용이한 활용을 가능하게 한 가명정보, 그리고 개인정보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익명정보를 법 내에 명시적으로 구분을 두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가명정보의 경우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 하에서 동의 없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는 점은(이양복, 2020), 특기할 부분이다. 가명정보 및 익명정보로부터 정보주체를 재식별화 하는 것이 불가능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천지영·노건태, 2020), 안전조치의무를 구체적으로 부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재난상황에서도 유사한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가령 확진자와 관련된 다양한 가명정보 및 익명정보가 언론보도를 통해 노출이 될 경우, 이러한 정보들을 취합하여 특정인을 식별 가능하게 되는 상황을 간과할 수 없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가 보유하는 각종 관련 정보들은 정보공개법에 의해 국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공개 대상에 속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동법 제9조 제1항에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정보 유형 8가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 본 사안에 해당이 되는 비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즉 개인 식별정보라고 할 수 있다.¹⁸⁾

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외한다.

18)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

하지만 동시에 해당 조항은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정보지만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거나,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바, 공익이라는 개념 자체가 내포하는 불확정성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경우 공익을 자의적이고 규범적 해석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이승선, 2020), 정보공개법을 통해 확진자의 개인정보와 같은 인격권이 침해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따지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정보공개법의 지나친 정보 통제와 관련된 비판은 대체로 국가기밀과 같은 공공부문에 대한 정보이고(김태호, 2002; 이근옥, 2019), 이는 개인에 대한 정보와는 구별되어 논의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미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사태를 거치면서, 개인정보 노출과 관련된 홍역을 한 차례 경험한 바 있으며, 당시 정보의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감염병 예방법은 대폭 개정을 맞았다.¹⁹⁾ 특히 감염병 유입 초기에 이를 신속히 관리할 수 있도록 일부 법이 보완 및 신설되는 방향으로 개편이 되었는데,²⁰⁾ 그 중에서 감염병이 확산되는 경우,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19) 김지은 (2015. 12. 9). 국가 방역체계 강화...감염병예방법 본회의 통과, <Newsis>, URL: https://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209_0010468204&cID=10201&pID=10200.

2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감의 감염병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제4조 제3항 신설), 감염병이 확산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감염병

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제34조의2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개편은 “감염병 위기에 따른 대국민 정보공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정보 수집과 공유 및 이를 근거로 한 각종 조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정태중, 2020),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특히 이러한 정보 처리를 통해 감염병 전파가 효율적으로 방지된 것인지 알 수 없고 침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 보다 덜 침해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비판도 공존한다(김가연, 2020). 아래 <표 1>은 현재 지자체 등에서 공개하고 있는 확진자에 대한 정보를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 제1항에서 분류하고 있는 개인정보 기준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2020년 4월 기준)

<표 1> 지자체·언론 등에서 공개하고 있는 확진자 정보의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분류²¹⁾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 제1항	공개되는 개인정보 세부 내용
이동 경로	-공공다중시설에 대한 이동 경로 -시간대별 구체적인 이동 경로(직장, 거주지역 등 공개)
이동 수단	-대중교통: 이용 날짜, 시간, 구체적인 대중교통 종류 및 번호 -자차 이용 여부

환자의 이동경로 및 진료의료기관과 접촉자 등 공개(제34조의2 신설), 감염병에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방역관의 감염병 예방·방역대책, 통행제한·주민대피, 감염병 매개물 등의 폐기·소각, 의료인 등 감염병 관리 인력에 대한 임무부여 및 방역물자의 배치 등 감염병 현장에 대한 조치권한과 해당 경찰관서의 장, 소방관서의 장 및 보건소의 장 등의 협조(제60조),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역학조사관 배치와, 긴급한 상황에서 역학조사관에 의한 감염병환자가 소재 장소의 일시적 폐쇄 조치 등(제60조의2 신설)을 도입하는 규정이 신설 및 보완되었다.

21)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가 4차례 이상 개정된 바 있으나, 해당 개인정보 공개 내용에 대한 부분은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연구 분석과 결과해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2) 감염병예방법 상에는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외에 ‘감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 제1항	공개되는 개인정보 세부 내용
진료의료기관	-감염병 검사를 받은 병원 및 입원과 치료를 받은 병원
접촉자 현황	-접촉한 인원수 -밀착 접촉자에 대한 정보
이 외에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 정보 ²²⁾	-확진자에 대한 구체적인 나이, 성별, 감염경로 -해외입국자의 경우 입국한 국가 및 직장

정리하면 개인 식별정보에 대한 엄격한 사전 동의를 요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은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관련 있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감염병예방법 제6조에 기속되며(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 제1항의 3호),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 상황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확진자에 대한 고유식별 정보를 요청·수집·관리·보유·처리할 수 있고(감염병예방법 제40조의5 제2항, 동법 제76조의2),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게재 또는 배포해야 하며(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 제1항), 이러한 개인 식별정보는 공익을 위해서는 공개가 될 수 있다(정보공개법 제19조 제1항의 6호).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개되는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감염병 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주로 공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이근옥, 2020).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감염병 예방이라는 공익과 확진자의 개인정보 보호라는 개인의 인격권 간의 조화적인 해석을 통한 이익형량의 과정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실증연구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염병의 지역별 연령대별 발생 및 검사 현황에 대한 정보’도 있으나, 이는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확진자 개인에 대한 정보가 아니므로 제외하였다. 또한 ‘이 외에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 정보’의 세부내용에는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 제1항에서 분류하는 기준에는 명확히 해당하지 않지만, 지자체와 언론 등에서 공개하고 있는 확진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2020년 4월 기준). 특히 ‘성별, 나이 등의 정보’는 공개 정보에서 제외된 바 있지만(2020년 9월 개정), 여전히 언론에서는 보도하고 있음을 반영했다.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위의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코로나19에 대한 언론보도에서 확진자의 개인정보 공개가 어떠한 범주로 이뤄지고 있는가.

연구문제 2: 이용자들이 인식하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언론보도의 개인정보 공개의 적정 수준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가. 연구의 설계

위 연구문제의 해결을 위해, 본 연구는 현재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배포되는 언론보도 내 개인정보 공개 현황을 살펴보고, 공개된 정보의 범주에 따른 이용자들이 인식하는 언론보도 내 개인정보 공개의 적정 수준을 실증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앞서 <표 1>에서 살펴본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확진자 개인정보 목록에 따라 현재 지자체 등에서 공개하고 있는 개인정보들을 바탕으로, 해당 정보들의 공개 범주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지자체에서 공개되는 개인정보의 경우, 접촉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확진자가 발생한 장소의 공개 여부에 주요 기준점이 되고 있으며, 선행연구를 통해 공익과 개인정보 침해수준이 재난보도 시 개인정보 공개의 쟁점이 되고 있음을 바탕으로(박미정, 2016), 현재 공개되는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공익성’, ‘개인정보 침해수준’, ‘접촉자 특정 가능성’을 기준으로 재분

류하였고, 이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공익성과 개인정보 침해수준으로 재분류한 확진자 개인정보

분류		세부요소
공익성은 높고 개인정보 침해수준은 낮은 정보		-진료의료기관 -구체적인 발병·치료 기간 -진단 및 예방 정보 -확진자 현황
공익성도 높고 개인정보 침해수준도 높은 정보	접촉자 특정 가능성 낮음	-대중교통 -공공·다중시설
	접촉자 특정 가능성 높음	-거주지 세부 주소 -직장명 -밀착 접촉자 -세부 동선
공익성은 낮지만 정보 결합 수준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있는 정보		-구체적인 나이, 성별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구분한 확진자의 개인정보 분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익성은 높는데 개인정보 침해수준은 낮은 정보에는 진료 의료 기관과 구체적인 발병·치료 기간, 진단 및 예방 정보, 그리고 확진자 현황 등이 해당하는데, 이 정보의 경우 공익성이 상당히 높은 정보들이고 현재 정보 공개에 있어 큰 논란이 없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지난해 코로나19 발병기간 동안 문제가 되었던 것은 여기서 두 번째, 즉 정보 공개에 대한 공익성이 높으면서 동시에 개인정보 침해 소지도 높은 정보들이다. 이 정보는 접촉자 특정 가능성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 중에서 접촉자 특정 가능성이 높은 확진자의 세부 주소, 직장명, 밀착 접촉자, 구체적인 동선 등이 문제가 된 바 있다.²³⁾ 이와 관련하여 질병관리본부(2020.4.12.)는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23) 김평화 (2020. 2. 10). [디지털 낙인 NO!]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낙인...“확진자 마음마저 병든다”, <IT Chosun>, URL: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09/2020030903391.html

각 지자체에 지난 2020년 3월과 4월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에 대한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배포한 바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접촉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개인정보 공개 수준을 달리 하고 있는데, 즉 접촉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는 ‘대중교통’과 ‘공공·다중시설’ 등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되, 상대적으로 접촉자를 특정하기 용이한 ‘거주지 세부 주소’나 ‘직장명’ 등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로써 공개되지 않도록 했다. 나아가 전자의 경우에도 접촉자가 모두 파악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고, 후자 역시 불특정 다수가 접촉 가능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공익성도 낮고 개인정보 침해수준도 낮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했을 때 개인에 대한 식별 가능성을 높이는 정보가 있다(박미정, 2016). 가령 확진자에 대한 ‘구체적인 나이’와 ‘성별’ 등을 즉시 공개하는 것은 감염병 예방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지만, 공개된 다른 정보와 결합했을 때는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로 활용되어 개인 식별성이 용이해진다는 특징을 갖는다.²⁴⁾

이상으로 공익성과 개인정보 침해수준으로 재분류한 확진자 개인정보 중, 공익성은 높지만 개인정보 침해수준이 낮은 정보를 제외하고, ① 공익성도 높고 개인정보 침해수준도 높은 정보 중 접촉자 특정 가능성이 낮은 정보, ② 공익성도 높고 개인정보 침해수준도 높은 정보 중 접촉자 특정 가능성이 높은 정보, ③ 공익성은 낮지만 정보 결합 수준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기준으로 확진자에 대한 언론보도 현황과 이용자가 인식하는 개인정보 공개의 적정 수준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고자 한다.

나. 기사분석

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9)에 따르면 개인식별 가능성이 높은 정보에는 고유식별정보와 식별가능정보가 있는데, 후자에는 ① 성별, 연령(나이), 국적, 혈액형, 신장, 몸무게, 직업, 위치정보 등 가명정보처리자의 입장에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② 특이정보가 포함된다.

먼저, 코로나19 재난보도에서 개인정보 공개가 어떠한 범주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실제 보도된 기사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다. 이를 위해 국내 첫 집단감염의 시발점이 된 00번 확진자 발생에 주목하여, 해당 확진자 개인정보를 다룬 기사를 분석하기로 하였다.²⁵⁾ 실제 국내 코로나19 감염병 전파 상황 속에서 00번 확진자가 발생한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첫 집단감염이 나타나 국내외의 관심이 집중되었으며, 많은 언론보도가 이루어졌다.²⁶⁾ 특히 당시에는 대략적인 감염병 보도 가이드라인조차 정립되지 않은 상태여서, 00번 확진자 개인에 대한 정보 특히 신상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내용까지 보도되는 등 개인에 대한 인격권 침해는 물론 혐오와 갈등을 조장하게 되는 문제로까지 이어졌다.

00번 확진자 발생에 대한 언론보도 조사 기간은 검사 결과가 발표된 시점인 2020년 2월 18일부터 3월 17일까지 약 한 달이다. 이는 2월 18일 00번 확진자의 결과가 나온 당시 대구의 확진자 수가 1이었던 것을 기점으로 1개월 간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3월 17일에 6098명에 이르고, 이후 그 증가폭이 둔화되어 완만해졌던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²⁷⁾ 특히 이와 같이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시기에는 관련 언론보도가 경쟁적으로 많이 생산되었고, 국내 첫 집단감염의 시작이자 대구 첫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확진자 개인에 대한 정보를 다루는 기사가 많을 수밖에 없었던 사실에 주목했다. 기사 검색은 빅카인즈(www.bigki

25)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지침이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염병 전파 초기에 개인정보 처리 기준이 현재와는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감염병 보도에 대한 인식과 논의가 미흡한 상태에서 나타난 언론보도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고, 일부 법률이나 지침을 따르지 않는 언론보도의 문제점도 살펴볼 수 있다.

26) 대구에서 00번 확진자 발생을 기점으로 확산된 집단감염은 국내 코로나19 사태의 큰 변곡점이었으며, 이로부터 1년된 시점에 당시의 집단감염 발생을 다시 집중 조명하는 언론보도가 적지 않게 이루어지기까지 했다. 손은민(2021.2.18.). '00번 확진자' 그 후 1년...끝나지 않은 사투. <MBC>, URL: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92597_34936.html.

27)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참조, URL: <http://covid19.daegu.go.kr/00937420.html>.

nds.or.kr)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조사 대상 언론사는 중앙지 11곳(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이다. 기사 조사를 위해 검색어는 ‘대구 00번 확진자’로 하였으며, 검색결과 총 1034건의 기사가 나왔다. 이 중 확진자 개인에 대한 정보가 전혀 포함되지 않고 단순히 언급만 된 사설이나 칼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발언 내용에만 포함된 경우 등은 조사에서 제외하여 총 분석 대상 기사수는 987건이다.

분석 대상 기사는 앞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도출한 개인정보 분류 체계와 세부요소를 기준으로하여 중복 체크했다. 코더 간 신뢰도 검증을 위해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과 대학원생 2명이 분석에 참가했다. 전체 분석대상 콘텐츠 중 약 10%를 무작위로 추출하였으며, 크리펜도르프 알파 값을 사용해 사후 코딩한 결과, ‘공익성은 높고 개인정보 침해수준은 낮은 정보’는 1.0, ‘공익성도 높고 개인정보 침해수준도 높은 정보’ 중에서 ‘접촉자 특정 가능성이 낮은 정보’는 .87, ‘공익성도 높고 개인정보 침해수준도 높은 정보’ 중에서 ‘접촉자 특정 가능성이 높은 정보’는 .83, ‘공익성 낮지만 정보 결합 수준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있는 정보’는 .88로 나와 대체로 만족할만한 수준이었다. 분석 결과는 기술 통계와 각각의 분류 체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기사 예시를 들어 논의하도록 한다.

다. 설문 절차

설문에서 제공된 기사는 실제 코로나19 확진자와 관련하여 보도된 기사 중 일부를 발췌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였다. 설문 기사는 개인정보 공개 수준에 따라 총 세 종류의 기사로 구성되었다. 우선 ‘공익성은 높고 개인정보 침해수준은 낮은 정보’의 경우 정보 공개에 있어 큰 논란이 없는 영역이고 대부분의 감염병 관련 재난보도에 해당 정보가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기사에 제공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다음으로 개인정보 공개 수준 정도에 따라 첫째, ‘공익성도 높고 개인정보 침해수준도 높은 정보’ 중에서 ‘접촉자 특정 가능성이 낮은 정보’로 구성된 기사, 둘째, 여기에 더해 ‘공익성도 높고 개인정보 침해수준도 높은 정보’ 중에서 ‘접촉자 특정 가능성이 높은 정보’까지 포함하여 구성된 기사, 셋째 ‘공익성은 낮지만 정보 결합 수준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있는 정보’까지 모두 포함하여 구성된 기사를 순차적으로 각각 제공하였다.²⁸⁾

본 연구는 설문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를 다루는 언론보도의 저널리즘 원칙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객관적 평가와 이용자들이 느끼는 효용성 측면의 주관적 평가,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언론보도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KBS 재난방송 매뉴얼과 재난보도준칙(재난방송 매뉴얼 7차 개정판)>을 중심으로 언론보도가 재난 보도시 지켜야 할 원칙들인 ‘정확성’, ‘투명성’, ‘객관성’, ‘신뢰도’에 대한 문항들로, 주관적인 평가는 해당 보도가 코로나19 상황의 타개 및 극복에 ‘필요한 정보’인지에 대한 문항과 코로나19와 ‘관련이 있는 정보로 인지’하는지에 대한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은 다음과 같다. ‘정확성’은 ‘위 기사가 코로나19 감염 및 전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

28) 설문에서 제공된 기사는 실제 코로나19 확진자와 관련하여 배포된 기사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개인정보 공개 수준에 맞춰 내용 중 일부를 수정 및 보완하였다. 예를 들어 ‘공익성은 낮지만 정보 결합 수준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있는 정보’까지 모두 포함하여 구성된 기사의 경우, “수원 서둔동 ‘센트라우스 아파트’에 거주하는 5번째 확진자 발생...고양지역 거주하는 ‘지인’과 함께 제주도 방문”이라는 기사 제목과 함께 “경기 수원지역에서 5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12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역 5번째 확진자는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센트라우스 아파트’에 거주하는 50대 남성 A씨이며 무직이다. 시는 그가 지인인 고양지역 12번째 확진자로부터 밀접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고양지역 12번째 확진자는 50대 여성으로, 고양 일산서구 주엽동 ‘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직장은 서울 종로구에 있는 ‘농협카드 콜센터’로 알려졌다. 수원 5번째 확진자(50대, 남성)와 고양지역 12번째 확진자(50대, 여성)는 지난 8일(금)부터 제주도를 이틀간 함께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제주도 역시 비상에 걸렸다. (중략)”로 제공되었으며, 다른 설문 기사도 개인정보 공개 수준에 맞춰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투명성’은 ‘위 기사가 코로나19 감염 및 전파에 대해서 투명하게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객관성’은 ‘위 기사가 코로나19 감염 및 전파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신뢰도’는 ‘위 기사가 코로나19 감염 및 전파에 대해서 신뢰가 가도록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관련성’은 ‘위 기사가 코로나19 감염 및 전파와는 상관없는 정보들을 지나치게 담아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필요성’은 ‘위 기사에서 주어진 정보만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내가 ‘필요한 정보(감염 및 전파 현황과 대처 상황)’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로 측정되었다. 설문은 보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위해 모두 7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7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하였다.

본 조사는 ‘코로나 19 언론보도에 대한 의견조사’라는 제목으로 2020년 8월20일부터 26일까지 총 일주일간 인터넷 설문 조사(Internet Panel Survey) 형태로 실시되었다. 조사 대상은 ‘KBS 국민패널’을 이용하여,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중, 주민등록통계(2020년 7월) 기준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비례할당에 따라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그 결과 1,000명 중에서 불성실한 대답 13개를 제외하고 총 987명의 유효표본을 획득할 수 있었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pm .3\%$). 응답자는 여성 496명(50.3%), 남성 491명(49.7%)이고, 18~29세가 180명(18.2%), 30대가 157명(15.9%), 40대가 188명(19.0%), 50대가 194명(19.7%), 60대 이상이 268명(27.2%)이었으며, 지역은 서울이 188명(19%) 인천/경기/강원이 336명(34%). 부산/울산/경남이 151명(15.3%), 대구/경북이 98명(9.9%). 대전/충청/세종이 104명(10.5%), 광주/전라/제주는 110명(11.1%)이었다.

조사 대상자들에게는 개인정보 공개 수준 낮음, 중간, 높음 단계로 세 개의 기사가 차례대로 제공되었으며, 기사 상단에 실제 보도 중 일부를 발췌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및 보완된 기사임을 밝혔다.

IV. 연구결과

1. 코로나19 언론보도에 나타난 확진자의 개인정보 공개 범주

전체 분석 대상 기사를 해당 분류 체계의 세부요소를 포함하고 있는지 중복 체크하여 분석한 결과, 총 987건의 기사 중에서 진료의료기관, 구체적인 발병 및 치료 기간, 진단 및 예방 방법, 확진자 현황 등 전염병 전파 상황을 파악하는데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공익성은 높고 개인정보 침해수준은 낮은 정보’는 전체 987건 기사 모두에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공익성도 높고 개인정보 침해수준도 높은 정보’ 중에서 대중교통이나 공공·다중시설과 같이 ‘접촉자를 특정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정보’가 포함된 기사는 총 554건이었으며, 거주지 세부 주소나 직장명, 밀접접촉자, 세부 동선과 같이 확진자를 특정할 가능성을 높이는 정보가 포함된 기사는 168건에나 이르렀다. 또 ‘공익성은 낮지만 정보 결합 수준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있는 정보’인 나이와 성별 등이 포함된 기사도 46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표 3〉 코로나19 보도에서 나타난 ‘00번 확진자’에 대한 개인정보 유형별 분석 결과

개인정보 유형 분류		세부요소	기사수
공익성은 높고 개인정보 침해수준은 낮은 정보		-진료의료기관 -구체적인 발병·치료 기간 -진단 및 예방 정보 -확진자 현황	987
공익성도 높고 개인정보 침해수준도 높은 정보	확진자 특정 가능성 낮음	-대중교통 -공공·다중시설	554
	확진자 특정 가능성 높음	-거주지 세부 주소 -직장명 -밀착 접촉자 -세부 동선	168
공익성 낮지만 정보 결합 수준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있는 정보		-구체적인 나이, 성별	460

보다 구체적으로 언론보도에서 확진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어떠한 범주에서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분석한 기사의 일부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조사 대상인 전체 987건의 기사 모두에서 나타난 진료의료기관, 구체적인 기간, 진단 및 예방정보 등과 같은 ‘공익성은 높고 개인정보 침해수준은 낮은 정보’는 다음과 같은 골자로 구성되어 있다.

대구광역시가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00번째 확진자의 주요 동선을 공개했다. 00번 환자는 지난 17일 오후 10시 확진자로 판정돼 대구의료원에 격리됐다. 직장은 대구시 동구에 위치했고 주로 자차와 택시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00번 환자의 주요 동선. 6일 대구 서구에서 교통사고 발생 7일 수성구 새로난한방병원 4인실 입원 8일 발열 9일 남구 대구교회 예배 15일 동구 호텔 부패에서 식사 16일 남구 대구교회 예배 17일 오후3시30분 수성구 보건소 17일 오후 4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 17일 오후 10시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00번째 확진자) - 대구의료원 격리 - 남편과 자녀 2명 자가 격리 (00번째 확진자, 대구 새로난한방병원 입원, 대구교회에서 예배, 중앙일보, 20.2.18)

위의 기사에서 보는 것과 같이, 00번 확진자 발생 당일 보도되기 시작한 기사의 내용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별된 사실을 밝히는 것을 시작으로 확진자의 증상과 관련 의료기관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었다. 특히 검사를 받은 해당 지역 보건소인 의료기관 명칭과 방문한 일자와 시간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방문 전까지 나타난 증상과 기간을 추가 정보로 제공하고 있다. 이는 해당 정보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에서 인지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으로써, 감염병 전파 상황 파악을 위한 공익성이 높은 정보라고 판단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때 해당 정보 공개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

하고 감염병 대응이라는 공익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동선에 있는 시설이나 기관의 구체적인 명칭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을 삼가고 확진자의 성별이나 나이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필수적인 내용의 정보만이 기사에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 확진자를 특정할 수 있는 ‘공익성도 높고 개인정보 침해수준도 높은 정보’들이 함께 결합되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다음은 그 중에서 ‘접촉자 특정 가능성이 낮은’ 정보들이 결합된 기사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입원 전인 6~7일에는 대구 동구에 있는 직장에 출근했다. 일요일인 지난 9일과 16일에는 남구 교회(남구 대명로 81 대구교회)에서 2시간씩 예배에 참석했다. 15일에는 지인과 동구에 있는 호텔(퀸벨호텔)에서 점심식사를 했다. 지난 1월 29일에는 서울 강남에 있는 소속 회사 본사를 방문한 이력도 파악됐다. (중략) 최근 한달 이내 해외여행을 한 적이 없는 00번째 환자가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이력이 현재까지는 확인되지 않아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특히 이 환자가 지역의 중형병원, 교회, 호텔 등을 거쳐 갔고, 대중교통도 이용한 것으로 조사돼 ‘슈퍼 전파자’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00번째 확진자 동선에 대구 긴장...한방병원·교회에 서울 강남도, 서울신문, 20.2.18)

아래 두 예시는 ‘접촉자 특정 가능성이 낮은’ 정보에 더해, ‘접촉자 특정 가능성이 높은’ 정보들까지 함께 구성되어 상대적으로 개인정보 침해 정도가 더 높은 기사 내용들 중 일부이다.

A씨가 지난 6~7일 2차례 찾은 동구 부띠끄시티테라스 오피스텔 201호 C클럽과 신천지 대구교회도 폐쇄조치 뒤 방역을 하고 있다. 환자의 아들 B씨가 다니는 달성군 한 자동차부품업체도 B씨를 긴급 자가격리 조치를 하고 사무실 등을 소독했다. 일단 00번 환자 가족 2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벌인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 음성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뜻한다. 이들 외에 환자 직장동료 4명, 지인 4

명, 택시기사 5명 등 나머지 접촉자들에 대한 검사는 진행 중이다. 이 밖에 A씨가 입원한 한방병원 소속 간호사의 자녀가 다니는 수성구 한 유치원도 원아들을 귀가시키고 당분간 휴원키로 했다. (00번 환자, 코로나 19 진단검사 권유 2차례 거부 논란, 서울신문, 20.2.19)

00번 접촉자 확인, 시간 걸릴 듯 = 00번 환자는 1월 29일 직장인 C클럽 서울 강남구 본사를 방문했고 지난 6일과 7일 2차례 방동구 뷰티크시티테라스 오피스텔 201호 C클럽에 출근했다. 6일밤 교통사고를 당해 7일 수성구 새로운한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밤늦게 4인실에 입원했다. 그후 9일과 15일, 16일 등 모두 3차례 외출했다. 일요일인 9일과 16일에는 남구 신천지대구교회에서 2시간 예배에 참석했고 15일에는 지인과 동구 컨벨호텔 뷔페식당에서 지인과 점심식사를 했다. 이 환자는 진료와 입원 중 오한과 발열증상을 보여 검사를 받았고 10일에는 체온이 38.8도까지 올랐으나 코로나19 관련 검사를 받지 않았다. 이 환자는 15일 새로운병원의 검사에서 폐렴소견이 나왔는데도 이틀간 호텔과 교회에 방문한 후 17일 오후에야 병원의 권고로 수성구보건소를 찾아 폐렴 증상을 호소해 처음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00번 확진자 광복동선에 대구·경북 패닉, 내일신문, 20.2.19)

위의 기사에서는, ‘공익성이 높으면서도 개인정보 침해수준도 높은 정보’ 중 확진자가 이용한 대중교통, 해당 대중교통에서 접촉한 확진자 수, 확진자의 세부 동선,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확진자가 거쳐 간 병원, 교회, 호텔 등의 공공 또는 다중이용시설 명칭이 그대로 공개되었다. 하지만 이들 정보는 앞의 ‘공익성은 높고 개인정보 침해수준은 낮은 정보’와 같이 제공되어도 확진자 개인을 특정하기 어렵고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정도보다는 감염병 전파 상황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익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외에도 해당 확진자가 거주하는 구와 동이

포함됨 주소지, 직장명, 가족과 동료 등을 포함한 밀접접촉자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기사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확진자 동선 중 접촉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 교회나 직장은 호수를 포함한 구체적인 주소 전체가 포함되었으며, 확진자 가족의 직장 위치와 업종까지 공개되었다. 사실 이러한 세부적인 개인정보 요소는 공개되었을 때, 보건당국이나 지자체가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접촉자 명단을 구성하기 전에 미리 접촉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진단검사나 자가격리와 같은 선제적 조치를 행할 수 있게 해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해당 정보들은 지나치게 개인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확진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성이 매우 크다. 특히 진료의료기관이나 발병 기간과 같은 기본적인 정보에 더해, 직장·거주지·이동 동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들이 결합 된다면 정보주체에 대한 식별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지고 개인정보 침해의 소지도 커진다. 더욱이 전체 987건의 기사 중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기사에서 발견된 확진자의 나이 및 성별과 같은 ‘공익성은 낮지만 정보 결합 수준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있는 정보’까지 더해진다면 그 침해의 정도와 위험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이와 성별과 같이 지극히 개인적이면서 결합 정도에 따라 식별 가능성을 높이는 정보들이, 감염병 전파와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정보인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크다는 점이고,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2. 이용자들이 인식하는 코로나 19 확진자에 대한 언론보도의 개인정보 공개의 적정 수준

코로나 19 확진자에 대한 언론보도의 개인정보 공개 수준에 따른 이용자들의 ‘정확성’, ‘투명성’, ‘객관성’, ‘신뢰도’, ‘관련성’, ‘필요성’에 대한 인식 결과는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코로나 19 확진자에 대한 언론보도의 개인정보 공개 수준에 따른 이용자들의 인식

	공익성도 높고 개인정보 침해수준도 높은 정보		공익성은 낮지만 정보 결합 수준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있는 정보
	접촉자 특정 가능성 낮음	접촉자 특정 가능성 높음	
정확성	M=5.33 (SD=1.333)	M=5.52 (SD=1.178)	M=5.36 (SD=1.234)
투명성	M=5.40 (SD=1.288)	M=5.49 (SD=1.172)	M=5.38 (SD=1.206)
객관성	M=5.38 (SD=1.312)	M=5.46 (SD=1.209)	M=5.28 (SD=1.283)
신뢰도	M=5.19 (SD=1.311)	M=5.29 (SD=1.226)	M=5.13 (SD=1.288)
관련성	M=3.50 (SD=1.799)	M=3.51 (SD=1.808)	M=3.64 (SD=1.779)
필요성	M=4.91 (SD=1.448)	M=5.15 (SD=1.308)	M=5.02 (SD=1.325)

(n=987)

먼저 ‘개인정보 공개 수준이 낮은’ 보도와 관련하여 ‘정확성’은 평균치 5.33(SD=1.333), ‘투명성’이 5.40(SD=1.288), ‘객관성’이 5.38(SD=1.312), ‘신뢰도’가 5.19(SD=1.311), ‘관련성’이 3.50(SD=1.799), ‘필요성’이 4.91(SD=1.448)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개인정보 공개 수준이 중간’인 보도의 경우 ‘정확성’이 5.52(SD=1.178), ‘투명성’이 5.49(SD=1.172), ‘객관성’이 5.46(SD=1.209), ‘신뢰도’가 5.29(SD=1.226), ‘관련성’이 3.51(SD=1.808), ‘필요성’이 5.15(SD=1.308)로 나온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공개 수준이 높은’ 보도의 경우 ‘정확성’이 5.36(SD=1.234), ‘투명성’이 5.38(SD=1.206), ‘객관성’이 5.28(SD=1.283), ‘신뢰도’가 5.13(SD=1.288), ‘관련성’이 3.64(SD=1.779), ‘필요성’이 5.02(SD=1.325)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점은 이용자들은 ‘공익성도 높고 개인정보 침해수준 높은 정보’ 중 접촉자 특정 가능성이 높은 정보까지 포함된 수준의 개인정보 공개 정도가 가장 적정하다고 인식한다는 점이었다. 결과

를 살펴보면 해당 수준에서 정확성, 투명성, 객관성, 신뢰도, 필요성 모두 가장 높은 평균치를 나타내고 있다. 주목할만한 점은 개인정보 노출 수준이 가장 높은 보도에 대해서 이용자들이 해당 보도가 감염병과 관련되지 않은 정보들을 지나치게 담아내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는 특히 다른 정보와 결합했을 때 개인 식별 가능성을 높이지만, 공익성은 높지 않은 성별과 나이 등의 정보들이 감염병 보도에 있어 불필요함을 설시하는 부분이다. 또한 개인정보 노출 수준이 가장 높은 보도에서 투명성이 개인정보 공개 수준이 낮은 보도보다 낮게 나타난 점 역시 의미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즉 관련성이 없는 정보들을 보도에서 지나치게 많이 담아내는 것이 결코 보도의 투명성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다만 필요성과 관련하여서는 이용자들이 중간 수준의 개인정보 공개가 가장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 다음으로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공개가 높게 나온 점은, 이용자들 중 일부는 성별이나 나이 등의 정보가 자신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었다고 생각함에 유효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V. 결론 및 논의

언론보도가 그 어느 때보다 사람들에게 중요정보를 배포하는 창구로 작용하는 작금의 시기에,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따른 보도행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감염병 보도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는 확진자와 그 주변인에 대한 광범위한 사생활 침해를 일으키며, 재난상황에 대한 대응과 통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본 연구는 공익성과 개인정보 침해수준을 기준으로 방역당국과 지자체 등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공개하고 있는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재분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언론보도에서 과연 확진자에 대한 개인정보 공개가 어떠한 범주로 나타나는지 기사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이용자들이 인식하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언론보도의 개인정보 공개 적정 수준은 어떠한지 설문을 통해 검토하였다.

그 결과, 총 987건의 기사에서 확진자와 관련된 진료의료기관, 발병 및 치료 기간과 더불어, 감염병의 진단 및 예방 방법, 확진자 현황 등과 같이 감염병 상황 전반을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만 하는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익성도 높고 개인정보 침해수준도 높은 정보’ 중 확진자를 특정할 가능성이 낮은 대중교통 및 공공·다중 시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기사는 554건으로 전체 기사 중 약 56%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논란이 되었던 거주지 세부 주소 혹은 직장명, 밀착 접촉자, 세부 동선과 같이 확진자를 특정할 가능성을 높이는 정보가 포함된 기사는 약 168건으로 전체 기사 중 약 17% 수준이었다. ‘공익성은 낮지만 정보의 결합 수준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있는 정보’인 나이와 성별 등은 전체 기사 중 47%에 해당하는 460건에서 발견되었다. 무엇보다 ‘공익성은 높고 개인정보 침해수준은 낮은 정보’로만 구성된 기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으며, 대체로 확진자를 특정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들과 정보 결합 수준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높이는 정보들이 한 기사에 함께 적시된 경우가 많았던 점은, 공익적인 목적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제기한다. 부가적으로 몇몇 기사들에서는 나열된 개인정보를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구성함으로써 극적인 효과를 주고 있는데, 이는 확진자에 대한 인격권 침해는 물론 갈등과 혐오를 조장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를 요한다.²⁹⁾

29) 스토리텔링 기사는 청중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내러티브 구조나 줄거리를 창조하는 데 중점을 두어, 보다 극적인 기준으로 이야기 소재를 선택하고 나머지는 과감히 제외시켜 버리는 경향을 보인다(Ekstrom, 2000). 이러한 기사는 이용자의 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이끌어냄으로써 이용자를 연루시키고 드라마적 감성을 창조하며, 그것을 위해 스토리를 개인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다(Beasley, 1998). 따라서 스토리텔링 기사의 형식으로 확진자 개인정보가 구성된다면, 객관적 정보를 나열한 기사보다 더 자극적이고 감정적으로 이용자에게 다가가게 되고, 공개된 정보를 무분별하게 처리함으로써 확진자에

이어 본 연구에서 재분류한 개인정보 기준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된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기사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인식(정확성, 투명성, 객관성, 신뢰도, 관련성,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이용자들은 ‘공익성도 높고 개인정보 침해수준도 높은 정보’ 중 접촉자 특정 가능성이 높은 정보까지 포함된 수준의 개인정보 노출을 가장 적정한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설문 결과에서 개인정보 노출 수준이 가장 높은 기사의 투명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는데, 이는 관련 없는 정보가 과도하게 제공되는 것이 결코 보도의 투명성으로 연결되지 않음을 나타내는 부분이었다. 무엇보다 의미 있는 연구 결과는, 많은 이용자들이 ‘공익성은 낮지만 정보 결합 수준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있는 정보’의 제공이 코로나19와 큰 관련성이 없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와 성별 등과 같은 정보가 감염병 보도에 있어 불필요함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즉 동선공개와 상관없는 정보들의 경우 감염병 상황에서 이용자들에게 공익적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했듯이 해당 정보들은 전체 분석 기사 중 과반수에 가까운 기사에서 나타났고, 본 연구 유목인 나이와 성별 외에도 다양한 정보들이 함께 공개되었다. 이는 해당 정보들이 그 자체로는 식별 가능성이 낮기에 자칫 사소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그러한 정보들이 결합되었을 때 특히 식별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에 신중해야 하는 부분이다.

코로나19 감염병 전파의 장기화에 따라, 국가적으로 재난 안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무분별한 개인정보 노출과 관련하여 문제의식을 갖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급한 것은 분명하다. 선진국 수준의 ICT 인프라를 갖추고 이를 활용하여 감염병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반면 수집된 다양한 개인정보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언론을 통해 노출되면서 개인의 신상이 과도하게 공개되어 그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대한 인격권 침해는 물론 혐오 등의 부정적 감정을 조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 부분은 후속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 볼 필요가 있다.

간과하는 것은 높은 정보처리 기술력과는 상반되는 대응이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익과 개인정보 침해 정도를 면밀하게 따져 방역에 효과적이면서도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을 고민하는 것을 더 늦춰서는 안 된다. 특히 감염병 전파에 대한 언론보도에서 개인 식별 가능 정보는 민감하면서도 주목이 집중되어 개인의 인격권 침해 정도가 커질 수밖에 없고, 더욱이 재난상황에서 절대적인 공익의 강조는 개인의 인격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안별로 공익과 개인의 인격권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공익’과 ‘개인정보 침해수준’에 따라 분류한 개인정보 유형과 세부요소를 감염병 보도 가이드라인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여(본 연구의 <표 2> 참조), 개인정보의 수준과 영향에 대해 숙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익성은 높고 개인정보 침해수준은 낮은 정보’와 ‘공익성도 높고 개인정보 침해수준도 높은 정보’ 중 ‘접촉자 특정 가능성이 낮은 정보’는 언론보도에서 공개되는 것이 적절하지만, ‘공익성도 높고 개인정보 침해수준도 높은 정보’ 중 ‘접촉자 특정 가능성이 높은 정보’나 ‘공익성은 낮지만 정보 결합 수준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있는 정보’는 공익과 인격권의 이익형량의 관점에서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행위를 지양토록 해야 한다.³⁰⁾ 이처럼 현재 다소 혼선을 주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재난보도나 감염병 보도지침 또는 가이드라인에 범주를 구체화하여 명시하는 것은 취재 일선의 기자들이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개인정보 공

30)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에서 ‘공익성도 높고 개인정보 침해수준도 높은 정보’ 중 ‘접촉자 특정 가능성이 높은 정보’까지 포함된 수준의 개인정보 노출을 가장 걱정하는 수준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일깨워주는 부분이다. 재난이라는 위기상황에서 언론의 개인정보에 대한 무분별한 공개가 이용자들이 자신의 개인정보 노출과 인격권 침해라는 부분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하지 못하게 하였고, 공익과 인격권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이유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언론 스스로 합리적이고 합당한 개인정보 처리 기준에 따라 공익과 인격권의 조화를 꾀하는 노력을 먼저 보여주고, 이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도 재정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 수준을 결정하고 처리하는 과정에 기준을 제시해줌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한편 재난상황일수록 언론사 간의 경쟁적인 보도보다는 정부와 언론의 ‘협업’으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객관적이고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함이 최우선이다. 특히 지금과 같은 전례 없는 감염병 전파 상황에서는 확진 현황이 시시각각 변하고, 다양한 정보와 의견이 난무하여 혼란이 가중될 수 있기에, 컨트롤타워인 방역당국과의 유기적·즉각적인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권고 성격의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3판)’를 배포하면서, 역학적 연관성이 낮은 동선공개를 지양하고, 특히 성별·연령·국적 등을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로 지정하여 공개하지 않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해왔던 지자체와 달리 언론에서는 여전히 확진자에 대한 성별, 나이와 같은 주요 신상정보와 구체적인 동선 등을 그대로 공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에도 감염병 보도가 1년여간 이어지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을 지적받아 왔지만, 지난해 4월 긴급하게 발표된 감염병 보도준칙 외에는 더 이상의 수정이나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언론 스스로 지난 보도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문제점들을 살펴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실질적이면서도 효과적인 가이드라인 정립을 위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본 연구는 급작스러운 감염병 전파 상황에서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언론보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고민에서부터 시작되어,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 아래,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적 틀을 살펴보고 언론이 놓치고 있는 개인정보 접근·수집·처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인 개인정보 범주를 통해 따져보고자 하였다. 특히 논의의 근거로 실제 기사를 분석하고 이용자들의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기존 연구에서 나아가 보다 구체적이면서도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 부분이

큰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기사분석 대상을 확진자 1명에 국한하고, 설문조사에서 더 다양한 기사를 제시하지 못한 부분은 한계로 남는다. 이 부분은 추후 연구에서 다양한 확진자 사례와 기사 등을 보강하여 한 단계 더 발전된 연구로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불확실한 상태에 대한 위기·위험의식이 클수록 정보를 추구하는 경향이 높아진다. 그만큼 하나의 언론보도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를 접하고 그 안의 정보들을 결합하여 상황을 판단한다. 따라서 단지 일부 언론에서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미치는 파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할 수 없고, 이러한 정보들이 결합되어 개인식별 가능성을 높이며, 나아가 개인의 인격권 침해가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언론 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하며, 공익과 개인정보 침해 사이의 조화 및 균형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야 한다. 재난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더 강화되어 나타날 것이다. 그럴 때마다 언론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또 다른 문제 요인으로 부각된다면, 우리 사회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뿐 재난으로부터의 회복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언론보도의 개인정보 처리 문제가 조명되고 있는 바로 지금이 장기적 관점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이다.

■ 참고 문헌

- 강태욱 (2020). 데이터 3법 통과...의료·AI 등 산업 탄력 전망. <KISO 저널>, 38.
- 개인정보위원회 (2020. 9).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인정보위원회.
- 권건보 (2020). 감염병 위기 대응과 정보인권. <공법학 연구>, 제21권 제3호, 3-32.
- 권양섭·차상욱 (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방역 과정에서의 위치정보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이론실무연구, 8(4), 9-28.
- 김가연 (2020. 8. 7.).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 정보제공요청의 법적 문제. 제3회 한국공법학회 포럼 감염병예방법상 정보제공요청과 정보인권 포럼 자료.
- 김경희 (2017). 지역의 재난 뉴스에서 나타난 보도관행과 대안: 세월호 뉴스 생산과정에서의 기자들의 갈등구조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61(5), 7-39.
- 김대홍 (2011). 일본 NHK의 재난보도 시스템 심층분석. <관훈저널>, 119, 18-24.
- 김병국 (2005).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 <관훈저널>, 97, 149-159.
- 김진욱 (2020. 6. 10). 확진자 이동 경로 추적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제29회 국민생활과학기술포럼- 코로나 이슈와 사이버 안전 발표문.
- 김태호 (2002). 국가비밀과 정보공개: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및 제2호의 비공개사유와 그 운용을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8, 319-354.
- 문연주 (2012). 동일본대지진 보도와 대일이미지의 구성: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대일보도 비교분석. <일본학보>, 92, 271-28.
- 박경우 (2015). 세월호 참사 보도에 대한 독자 프레임과 매체 프레임. <한국소통학보>, 27, 297-330.
- 박미정 (2016). 감염병 대응관련 언론보도와 개인정보보호. <언론과법>, 15(3), 289-316.
- 박성우 (2017). 세월호 뉴스 보도와 생방송 속보, 특보 제작양식에서의 의례성 고찰: 재난보도에 대한 행위자 네트워크적 시선. <한국방송학보>, 31(3), 152-188.
- 박정훈 (2010). 전자감시와 프라이버시의 관계의 정립에 관한 연구. <법

- 조), 59(6), 124-177.
- 백선기·이옥기 (2014). 일본 대지진과 쓰나미 참사에 대한 국가별 보도태도의 비교연구 : KBS, NHK, CNN 방송보도에 대한 내용분석과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67-68.
- 손영화 (2014).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방안. <기업법연구>, 28(3), 355-393.
- 송상근 (2016). 취재원 사용의 원칙과 현실: 세월호 보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60(5), 34-62.
- 송가영 (2020). 감염병환자 개인위치정보자기적령권의 침해위험성 증대에 따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범죄수사학연구>, 6(1), 5-31.
- 심미선 (2020). 언론보도에서 알권리와 인격권 충돌에 관한 언론인 인식 연구. <미디어와 인격권>, 6(2), 1-41.
- 심훈 (2005). ‘쓰나미’에 대한 한미 양국 간의 이야기 구조 서사 분석: MBC의 <시사매거진 2580> 과 CBS의 60Minutes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9(6), 286-313.
- 오철우 (2020). [코로나19의 딜레마, 프라이버시 vs 방역의 효율] 스마트 방역 시대의 프라이버시 논란. <관훈저널>, 62(3), 118-127.
- 이경미·최낙진 (2008). 태풍 ‘나리’ 관련 제주지역의 재난방송보도 연구. <언론정보연구>, 45(1), 97-129.
- 이근옥 (2020). ‘정보공개법’상 개인정보 보호와 공익의 조화 : 코로나19 팬데믹하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103, 145-176.
- 이근옥 (2019). ‘정보공개법’상 국가기밀을 이유로 알권리를 제한하는 것의 타당성. <한국언론정보학보>, 98, 126-152.
- 이민규 (2011). 재난 보도 어떻게 해야 하나: 한·미·일 재난보도 비교와 재난보도 원칙을 중심으로. <관훈저널>, 119, 11-17.
- 이수형 (2005). ‘피의사실 공표 금지 엄격 적용과 국민의 알권리-공인의 피의사실은 공표돼야 한다’. <신문과 방송>, 414.
- 이승선 (2020).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의견대립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양복 (2020). 데이터 3법의 분석과 향후과제. <비교사법>, 27(2), 423-465.
- 이인호 (2007). 한국 정보법의 발전동향: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중심으로. <공법연구>, 35(4), 177-219.

- 이화행·정성호 (2014). 세계 뉴스통신사의 재난 보도 경향 연구: AP, AFP, DPA, 교도통신, 연합뉴스의 비교를 중심으로.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18(2), 157-183.
- 임연희 (2014). 세월호 참사에 대한 텔레비전 뉴스의 보도행태. <사회과학연구>, 25(4), 179-201.
- 원숙경·윤영태 (2015). 재난보도의 보도준칙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지역과커뮤니케이션>, 19(1), 197-219.
- 유승관 (2014). 외국의 재난보도 기준 및 보도사례. <언론중재>, 131, 18-27.
- 전형준 (2016). 기자 경력 및 기자 전문성에 따른 취재활동 분석: 메르스 취재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4(10), 381-391.
- 정수영 (2015). ‘세월호 언론보도 대참사’는 복구할 수 있는가? 저널리즘 규범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이론적 성찰. <커뮤니케이션이론>, 11(2), 56-103.
- 정종구·손정주 (2020). 코로나 동선공개에 대한 법적 고찰-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의 문제를 중심으로. <법학논고>, 70, 103-131.
- 정태종 (2020).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20(3), 289-316.
- 조성은 (2020.6.5). 감염병 대응에서 개인정보 처리 이슈와 과제. KISDI Premium Report 20-02.
- 조은희 (2012). 국내신문의 일본 대지진·원전사태 보도특성 연구. <사회과학연구>, 23(1), 117-143.
- 진나영·정정주 (2018). 한국 메르스 사태에 대한 국내외 언론보도 의미망 비교연구. <언론과학연구>, 18(2), 222-262.
- 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 접촉자관리단 (2020.4.12.).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2판).
- 천지영·노건태 (2020). 데이터 3법 시대의 익명화된 데이터 활용에 대한 제언. <정보보호학회논문지>, 30(3), 503-512.
- 최민음·정희수 (2018). 국내 재난 주관방송사의 재난보도 프레임 분석: 지카 바이러스 보도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7), 609-619.
- 최진봉 (2016). 방송 뉴스의 재난보도 콘텐츠에 대한 분석: 지상파 3사와 JTBC의 세월호 참사 보도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12), 539-550.

최창수 (2020). 데이터 시대 인격권 보호체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개인 정보 보호와 언론 면제를 중심으로. <미디어와 인격권>, 6(1), 1-38.

표시영 (2020). 한국 공영방송의 ‘코로나19’ 관련 보도의 프레임 분석: KBS <뉴스 9> 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2), 112-122.

표시영·정지영 (2020). 가짜뉴스의 형식적·내용적 특징과 여론 형성력: 가짜뉴스가 가지고 있는 위험요소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바탕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 27(4), 25-62.

황성기 (2003). 개인정보보호와 언론보도의 법적 문제. <언론과법>, 2, 168-198.

황유나·전미현·유재웅 (2016). 재난위기보도의 시계열·매체별 보도 특성: 세월호 사건에 대한 네트워크, 내용분석 적용. <한국위기관리논집>, 12(3), 1-15.

Ekstrom, M.(2000). Information, Storytelling and Attractions: TV Journalism in Three Modes of Communication. Media, Culture & Society, 22(4), 465-492.

Beasley, B.(1998). Journalists' Attitudes toward Narrative Writing. Newspaper Research Journal, 19(1), 78-89.

■ ABSTRACT

A Study on the Appropriate Categories of Personal Information Disclosure in Disaster Reports on the Spread of COVID-19

Jeong, Ji Yeong

Researcher, Communication · Media Research Institute,
Ewha Womans University

Pyo, Si Young

Researcher, Communication · Media Research Institute,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arose from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issues in disaster reports related to the spread of COVID-19. Here, the personal information of confirmed people who tested positive disclosed under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was reclassified. Based on this knowledge, the level of personal information disclosure in COVID-19 disaster reports was reviewed through an article analysis, and perception was reviewed in a survey. Initially, 168 of 987 articles included information that increased the possibility of identifying a confirmed person, including residence, workplace, close contacts, and detailed movements. Meanwhile, 460 articles included age and gender, classified as “information of low public interest but capable of personal information in fringement depending on the level or combination of information.” According to a survey of users’ perceptions, participants recognized revealing personal information as highly appropriate, including information that can specify people classified under

“information of high public interest and high level of privacy infringement.” Meanwhile, transparency in articles with high levels of information exposure was perceived relatively low; providing “information of low public interest but capable of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depending on the level or combination of information,” such as age and gender, was unrelated to COVID-19.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specific guidelines determining appropriate levels of personal information disclosure in media reports and intends to present a balance between realizing public interest and protecting human rights in disaster reports related to infectious diseases.

Keywords: disaster report, infectious disease, personal information, public interest, human rights, reporting guideline

[논문투고일 2021. 3. 13. 논문수정일 2021. 4. 7. 게재확정일 2021. 4. 8.]